

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

동물등록은 의무입니다

(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*가 면제됩니다)

*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(개)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

1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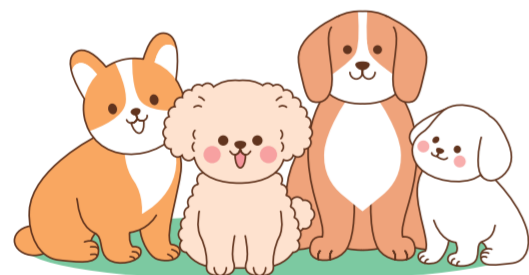
자진신고 5.1.~6.30.
집중단속 7.1.~7.31.

2차

자진신고 9.1.~10.31.
집중단속 11.1.~11.30.

동물등록 대상

2개월령 이상인 개
(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)
☑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

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!

- 1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
- 2 유기동물 발생 감소
- 3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(반려동물 놀이터,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)

동물등록 방법

내장형 방식

☑ **안전합니다**

- 1 동물병원 방문
- 2 내장칩 시술(주사)
- 3 등록 완료



외장형 방식

- 1 시·군·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(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) 방문
 - 2 외장형 장치 구입
 - 3 등록 완료
- ☑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(www.animal.go.kr)에서 확인 가능

변경신고 대상

- 10일 이내
- ☑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
 - 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 - ☑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·성명·주소·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
 - ☑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
- 30일 이내
- ☑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
 - ☑ 외장형 목걸이 분실,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 - ☑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

변경신고 방법

-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
- 2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
- 3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(소유자 변경, 사망, 잃어버림, 다시 찾음, 중성화 신고만 가능)

자세한 문의사항은 지방정부 관련부서(국번없이)120,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-0954로 문의주세요.



농림축산식품부

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